『종교와 문화』 제 38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0. pp 69-101.

조선왕실 문희묘(文禧廟) 의례의 형성과 특징*

권 용 란**

Ⅰ. 서론
Ⅱ. 유교의 죽음관과 무후자(無後者) 왕세자의 죽음
Ⅲ. 문희묘(文禧廟)의 건립
Ⅳ. 문희묘(文禧廟) 의례의 형성과 위격
Ⅴ. 맺음말

Ⅰ. 서론

문효세자(文孝世子, 1782~1786)[1]는 조선 제 22대왕 정조의 장자로 태어나 2세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지만 5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정조는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 사당을 마련하고 국가의례의 대상 신으로 책정하여 공식적으로 제사를 지내주었다. 이는 정조대뿐만 아니라 고종 대까지 유지되었다. 문효세자의 죽음은 살아생전 왕위에 오를 것이 예정 되어 있었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세자'라는 점에서 다른 왕손의 죽음과는 구별되었다. 또한 생부 정조에 의해 제향 되었다는 점에서 아랫세대가 위 세대를 봉안하는 조상 의례와는 차원이 달랐다. 정조 대까지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188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1) 정조(1776~1800)와 후궁 의빈 성씨(宜嬪 成氏, 1753~1786)의 맏아들로 태어났고 이름은 '순(晙)'이며,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후사 없이(無後者) 어린 나이에 죽은 세자를 국가의례 길례(吉禮)의 대상 신으로 삼았던 전례도 관련 법규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유교의 죽음관과 제례의 원칙 그리고 관련 법규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효세자는 후손 없이 죽어 양자를 들이지 않는 한 제사를 받지 못하는 여(厲)에 해당되며, 생부 정조에 의해서 제향될 수도 국가의례의 대상 신으로 봉안될 수도 없었다. 국가의례로서의 '문희묘 의례'는 유교의 예제(禮制)에서 어긋난 음사(淫祀)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 글은 문효세자가 국가의례의 대상 신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명분 및 배경을 살펴보고, 그 위격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당 '문희묘(文禧廟)'와 '문희묘 의례'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징과 함축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문희'는 문효세자의 사당을 지칭하는 묘호(廟號)이며[2], '문희묘 의례'는 상장례(喪葬禮) 이후 사당인 문희묘에서 행해진 정기 및 비정기 의례를 말한다.

조선시대 국가사전(國家祀典)에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세자와 관련된 의례는 영조대의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1744)의 '세자묘(世子墓)'[3]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세자묘는 사당이 아닌 묘소에서의 의례이다. 사당에서 행해진 세자묘 의례는 정조대의 『춘관통고(春官通考)』(1788)[4]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문희묘는 이전 왕대의 순회묘(順懷廟)·소현묘(昭顯廟)·의소묘(懿昭廟)[5]와 함께 '궁묘(宮廟)'의 영역으

---

2) 1786년(정조 10) 6월 20일 묘호는 '문희', 묘호는 '효창(孝昌)'으로 정해졌다.[『정조실록』 권21, 정조 10년 6월 20일(임진)] 문효세자의 묘소인 효창묘에는 의빈 성씨・순조의 딸인 영온옹주(永溫翁主)・순조의 후궁인 박숙의(朴淑儀)의 무덤도 있었다. 1870년(고종 7) '효창원(孝昌園)'으로 승격되었다. 당시 위치는 서부 율목동[현재 용산구 청파동 효창공원 내] 북서에서 남동방향이었다. 1924년 일제에 의해 서삼릉으로 옮겨졌고 효창원은 공원이 되었다. 현재 문희묘(文禧墓)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의 서삼릉 내역 의령원(懿寧園)앞에 있으며 사적 제 200호로 지정되었다.

3) 『국조속오례의서례』 권1, 「길례·변사」 이곳에 기록된 세자묘는 순회묘(順懷墓)・소현궁묘(昭顯宮墓)·민회묘(愍懷墓)·효장묘묘(孝章廟墓)이다. 순회묘는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順懷世子, 1551~1563)이며, 소현궁묘는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이며, 민회묘는 소현세자의 아내 민회빈 강씨(愍懷嬪 姜氏)이며, 효장묘묘는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孝章世子, 후대 진종, 1719~1728)이다.

4) 『춘관통고』 권1, 「길례·궁묘·순회묘·소현묘·의소묘·문희묘」

5) 의소묘는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적장자 의소세손(懿昭世孫, 1750~1752)의 사당

로 분류되어 있다. 이후 고종대의 『대한예전(大韓禮典)』(1897)에서도 문희묘를 비롯한 사당에서의 세자묘 의례가 유지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춘관통고』의 문희묘 의례를 기점으로 사당에서의 세자에 대한 의례가 국가의례로 규정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당'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의례의 대상 신이 생성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희묘를 기점으로 세자묘 의례가 국가의례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당시 왕실을 비롯한 국가에 어떤 의미였을까? 문효세자에게 양자를 세워 제사를 맡겨도 되었을 것을 국가의례로 등재하고 정조가 직접 제사를 지낸 이유는 무엇인가? 유교의 조상 의례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위격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물음을 출발로, 이 글은 두 가지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사당 문희묘의 설립 동인 및 배경이다. 일반적인 조상 의례의 명분이 효인 것과 달리 문희묘 의례의 성립 명분은 무엇이었는지를 볼 것이다. 둘째, 문희묘 의례의 특징 및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희묘 의례가 왕실 의례에서 어떤 위격을 가지는지 정조와 문효세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축문 호칭과 문희묘 의례의 종류, 시일 등을 통해서 보고자한다. 두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유교의 죽음관을 통해서 문효세자의 죽음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었는지 일반적인 유교 제례의 원칙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동안 길례의 대상으로서 문효세자의 죽음이후의 제향에 초점을 둔 연구논문은 찾기 힘들다. 주로 상장례에 초점을 둔 역사학과 건축학 분야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단독 연구로는 문효세자의 상장례의 절차와 특징을 연구한 이현진의 「정조대 文孝世子 喪葬 의례와 그 특징」[6]이 유일하다. 이현진은 문효세자의 상장례 절차와 특징을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왕의 국장과 비교하면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건축학적 관점에서 문효세자의 사당을 분석한 연구로는 이현진, 박희용의 공동연구인 「조선 정조대 文禧廟의 건립과정과 공간구성」[7]이 있다. 문희묘 사당의 건

이다.

6) 이현진, 「정조대 文孝世子 喪葬 의례와 그 특징」, 『규장각』 4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2), 103-143.

축구조와 특징을 조목조목 다루었다. 두 논문 모두 문효세자의 상장례에 대한 단독연구로서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

길례로서 문희묘 의례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가 부재한 것은 왕실관련 의례의 범주에서 볼 때 대상과 규모가 작았고, 당대 정치사에서 볼 때도 비교적 큰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만큼 남아 있는 문헌자료도 많지 않다. 물론 그동안 왕실의 사적인 성격이 강한 정례(情禮)로서의 사친(私親)추숭을 다룬 연구들이 나와 있다.[8] 그러나 조선왕실, 더 나아가 조선시대 유교 의례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간 다소 소외되었던 세자의 죽음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중에서도 문희묘는 국가의례에 등재된 첫 무후자 왕세자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교 의례에서 조상 의례의 비중이 큰 것은 당연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을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살아생전 '세자'라는 신분이 가지는 특성과 세자의 죽음 또한 일반적인 죽음과 구분되는 많지 않은 사례라는 점에서 조선 왕실의 종교문화, 더 나아가 조선시대 종교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이 글의 구체적인 연구 시기는 문효세자의 사당인 문희묘가 건립되고 문희묘 의례가 실천되기 시작한 정조대부터 순종 원년(1907년 7월 23일)에 신주가 땅에 묻히기 전(瘞安)까지이다. 연구 자료는 법전 『경국대전』(1484)·『속대전』(1746)·『대전통편』(1785)·『대전회통』(1865)에서 무후자 세자 의례에 관한 항목이다. 그리고 국가사전 『세종실록오례의(世宗實錄五禮儀)』를 비롯하여, 네 번의 예제 개편을 통해 편집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국조속오례의』·『춘관통고』·『대한예전』, 그리고 순종 원년(1907년 7월 23일)에 단행된 조선의 마지막 의례 개정안에

---

7) 이현진·박희용, 「조선 정조대 文禧廟의 건립과정과 공간구성」, 『규장각』 4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167-197.

8) 이영춘, 『朝鮮後期 王位繼承 硏究』 (집문당, 1998); 이현진, 「仁祖代 元宗追崇論의 推移와 性格」, 『北岳史論』 7 (북악사학회, 2000), 47-108; 박종천, 「조선시대 전례논쟁에 대한 재평가-入承大統의 전례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1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85-128; 조용철, 「朝鮮 世祖代 懿敬世子 喪葬禮 特徵과 構成」,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127-160; 권용란, 『조선시대 왕실 조상에 대한 연구』 (민속원, 2015).

서 관련 내용이다. 법전과 의례사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일성록(日省錄)』을 주로 참고하였다.

Ⅱ. 유교의 죽음관과 무후자(無後者) 왕세자의 죽음

유교의 죽음관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통로는 조상 의례이다. 중국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죽음에 대한 유교적 입장은 사람이 죽으면 혼(魂)은 하늘로 돌아가고, 백(魄)은 땅으로 돌아간다("魂氣歸于天 形魄歸于地")[9]는 것이다. 고대의 죽음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상 의례는 기념과 감사의 의미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상 의례를 기념과 감사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소통의 통로로 여기기도 하였다.[10] 남송의 주자(朱熹, 1130~1200)는 유교의 전통적인 죽음관에 근거해서 일물(一物)로서의 귀신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당시 사람들이 실체로 경험한 귀신에 주목하여 유교의 죽음관과 조상 의례를 연관시켜 논의하였다.[11] 주자에 의하면, 조상의 정신과 혼백은 이미 흩어졌어도 일부는 자손의 정신과 혼백으

9) 『예기』「교특생(郊特牲)」. "魂氣歸于天 形魄歸于地."
고대로부터 중국의 민간 신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더라도 그 혼은 온전히 존재한다고 여겼다. 살아있을 때 그대로의 감정과 사고 즉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는 영혼관이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사람이 영혼은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어졌다. 고대의 죽음관은 이후 유교의 전통적인 죽음의 이해와 공존하였다.

10) 안영상에 의하면, 성리학내에서도 조상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원시유교 논리에 기반한 조상은 일정 기간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성호학파와 성리학의 논리를 더욱 내재화시켜 죽은 조상은 임시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자기 정신의 일부라고 보는 영남 퇴계학파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다. 더불어 마테오리치는 천주교적 관점에서, 조상제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영혼불멸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성리학내에서도 조상 혼백의 정체성이 어떻게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며, 천주교와 구별되는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서술하고 있다. 안영상, 「천주교의 천주(상제)와 영혼불멸설에 대한 영남퇴계학파의 대응양식」, 『시대와 철학』 16/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5), 107-134.를 참조할 것.

11) 주자의 귀신론에 대해서는 박성규, 『주자철학의 귀신론』 (한국학술정보, 2005)을 참조할 것.

로 이어지는 것이 있어서 자손이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면 조상의 혼백이 이를 수 있다[12]고 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흩어지지만 아직 다 흩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사에는 감통하여 이르는(感格) 이치가 있으며, 죽은 자와 그의 자손은 동일한 기(一氣)에 속하므로 감응하여 소통하는(感通) 이치가 있다[13]고 하였다. 이러한 죽음관에 근거한 조상 의례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本)을 돌이켜 보고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보본반시(報本反始)'를 명분으로 한다.[14] 또한 예(禮)의 세 가지 근본—하늘과 땅은 생명의 근본, 선조(先祖)는 종족의 근본, 훌륭한 임금은 다스림의 근본—중 종족의 근본이라 하였다.[15] 모두 예의 근본으로서 조상 의례의 명분과 동기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상 의례는 어디까지나 제향을 받는 조상과 제향의 주체인 후손의 관계 설정이 전제된 것이다.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줄 후손이 없는 사자(死者), 즉 조상 의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이를 유교의 죽음관은'여(厲)'로 설명한다. 여는 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을 말하며, '무사귀신(無祀鬼神)' 또는 '여귀(厲鬼)'라 한다. 여는 『춘추좌전』의 백유(伯有)에 대한 이야기에서 유래한다.[16] 정(鄭)나라 사람에게 살해당한 백유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의 해결방안으로 양지(良止)를 백유의 후사로 삼아 제사 지내게 한다. 이때 자산(子産)은 귀신은 돌아갈 곳이 있으면 여가 되지 않는다("鬼有所歸 乃不爲厲")고 하였다. 살해당하여 비정상적인 죽음(bad death)을 맞이한 백유가 원한을 품어 다른 사람들의 죽음의 빌미가 되고, 그 해결방안으로 입후(立後)를 세워 제사를 받게 한 것이다. 정상적인 죽음(good death)으로 돌이켜 '조상'으로

---

12) 『주자어류』 권3. 「귀신」, "祖考之精神魂魄雖已散 而子孫之精神魂魄自有些小相屬 故祭祀之禮盡其誠敬 便可以致得祖考之魂魄."

13) 『주자어류』 권3. 「귀신」, "人死雖終歸於散 然亦未便散盡 故祭祀有感格之理 … 然奉祭祀者旣是他子孫 必竟只是一氣 所以有感通之理."

14) 『예기』 「교특생(郊特牲)」, "萬物本乎天 人本乎祖 此所以配上帝也 郊之祭也 大報本反始也."

15) 『순자』 「예론(禮論)」, "禮有三本 天地者 生之本也 先祖者 類之本也 君師者 治之本也 … 故禮 上事天 下事地 尊先祖而隆君師 是禮之三本也."

16) 『춘추좌전』 「소공(昭公) 7년」

만들어 준 것이다. 백유의 죽음에 대해 주자는 그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정(精)과 신(神)이 모일 수 있었다[17]고 설명한다. 백유의 죽음을 생사의 정상적인 이치(常理)가 아닌 것[18], 즉 백유가 제 명에 죽지 못한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인해 그 기가 "뭉쳐져서(氣猶聚) 아직 흩어지지 못한(未散)"것이라 하였다.

위와 같은 '여'에 대한 인식은 조선시대 국가의례로 실천된 '여제(厲祭)'에서 잘 드러난다. 태종 1년(1401)에 수창궁(壽昌宮)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여의 원기(怨氣)가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여 생긴 변괴로 보았다. 그리하여 1404년(태종4) 『홍무예제(洪武禮制)』를 근거로 여제를 행하기 시작했다.[19] 이후 성종 대에 길례 소사(小祀)로 책정되어 매년 봄 청명일과 가을 7월 15일, 10월 초1일에 중앙과 지방에서 "여제의(厲祭義)"와 "주현여제의(州縣厲祭義)"로 제향 되었다.[20] 조상의 자격과 범위를 벗어나 있는 비정상적인 죽음들을 국가가 제주(祭主)가 되어 합동의례로 처리한 것이다.

질병이나 재해의 원인을 여로 생각하는 영혼 빌미설과 그 해결방안으로 제사를 지내주는 행위는 무속과 불교에서도 볼 수 있다. 일생의례를 마치지 못한 비정상적인 죽음은 무속과 불교에서도 복을 주는 조상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고 여겨졌다. 이런 죽음의 경우, 한을 풀어주는 진혼(鎭魂)의례나 영혼결혼식으로 정상적인 죽음으로 돌이키고 난후, 천도의례를 통해 조상으로 안착시켰다. 정상적인 죽음의

---

17) 『주자어류』 권3. 「귀신」, "他是不伏死 … 更聚得這精神."
18) 『주자어류』 권3. 「귀신」, "伯有爲厲之事 … 謂非生死之常理"
19)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1월 14일(갑술).
20) 『태종실록』 권6, 태종 4년 6월 9일(무인).
국가의례에서 여귀로 지정한 대상은 자손 없이 죽은 자를 포함하여 15가지 경우로 죽은 자들이다. 맹수와 독충에 해를 당해 죽은 자(爲猛獸毒蟲所害死者)·얼고 굶주려 죽은 자(凍餒死者)·전투에서 죽은 자(戰鬪死者)·위급하여 스스로 목 매 죽은 자(因危急自縊者)·담이 무너져 압사한 자(被牆屋壓死者)·난산으로 죽은 자(産難死者)·벼락 맞아 죽은 자(震死者)·추락하여 죽은 자(墜死者)·죽은 뒤에 자식이 없는 자(歿而無後者)·칼에 맞아 죽은 자(遭兵刃死者)·수재나 화재 및 도적을 만나 죽은 자(遇水火盜賊死者)·남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핍박을 당해 죽은 자(被人取財物逼死者)·남에게 처첩을 강탈당하고 죽은 자(被人强奪妻妾死者)·형화를 만나 억울하게 죽은 자(遭刑禍負屈死者)·천재나 역질을 만나 죽은 자(因天災疾疫死者)이다(『국조오례서례』 권1, 「길례· 축판」)

통과의례와 천도의례의 이중적인 실천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질병이나 좋지 않은 일의 빌미로 작용할 원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병인론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였다.[21]

위와 같은 유교의 죽음관에 근거해서 본다면, 후손 없이 어린 나이에 죽은 문효세자에게 제사를 지내 줄 입후를 세우지 않는 한, 그의 죽음은 '여'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제례의 원칙으로 볼 때, 정조는 문효세자의 위 세대가 됨으로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아랫사람을 제사하려면 양자를 세워 제사지내게 하거나 위 세대와 합사(合祀)시켜야 한다. 상장례도 8세 미만에 죽으면 상복을 입지 않으며("不滿八世以下皆爲無服之殤")[22] 슬퍼할 뿐("殤以無服")[23]이라고 했다.[24] 이러한 유교의 죽음관과 제례의 원칙으로 볼 때, 국가의례로서의

---

21) 유교의 여제는 영혼 빌미설이 무속의 병인론에 한정해서 볼 수 없다는 실증적인 예가 된다. 기본적으로 불교의 재(齋)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고통 가운데 떠돌거나 헤매는 귀신을 달래고 깨우치게 하여 구제하는 것이고, 무속의 진혼굿은 귀신을 달램으로써 화를 방지하거나 복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유교의 제사는 조상을 향한 자손의 정성스런 마음을 표현하고 조상과의 감통을 강조한다. 빌미가 된 원혼에 대한 인식과 처리방식이 각 종교별로 독립적으로 구분될 수는 있어도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혼합양상을 띠는 경우도 있다. 관련 논문으로는 국가차원의 혼합양상에 관한 논문으로는 이욱, 「朝鮮前期 冤魂을 위한 祭祀의 변화와 그 의미－水陸齋와 厲祭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 (종교와 문화연구소, 2001), 169-187. 민간차원의 혼합양상은 구미래, 「한국인의 죽음관과 사십구재」 (민속원, 2009)를 참조할 것.

22) 가공언(賈公彥)의 소(疏)에 따르면, "『家語・本命』에서 말하길, 남자아이는 태어난지 8개월이 되면 젖니가 나고 8세가 되면 젖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난다고 하였는데, 『의례』에서 남자아이에 의거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8세 이상이면 유복지상(有服之殤)이 된다."고 하였다(『의례』「대공(大公)」, "賈公彥疏 案『家語·本命』云 男子八月生齒 八歲齔齒 今『傳』據男子而言 故八歲已上爲有服之殤也.").

23) 『의례』의 다음 구절을 보면, "무복의 상은 생존했던 달수를 날로 바꾸어 곡하며, 생존했던 달수를 날로 바꾸어 곡하는 상은 마음아파하며 곡을 할 뿐 상복은 없다("不滿八世以下皆爲無服之殤 無服之殤 以日易月 以日易月之殤 殤以無服)"고 하였다. 이에 관한 정현(鄭玄)의 주(注)에 따르면, "殤으로 죽은 자는 남자는 冠禮를 여자는 笄禮를 하기 전에 죽어 가슴아파할만한 자이다(殤者 男女未冠笄而死 可傷者) 라고 하였다. 또한 여자와 남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다할지라도 혼인을 약속한 상태였다면 殤으로 간주하지 않는다."(鄭玄注 女子子許嫁 不爲殤也)고 하였다. 관례와 계례가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였다면, 결혼은 죽음의 통과의례에서 상복과 곡하는 기간의 기준이 된 것이다.

24) 이현진은 문효세자의 상장례에 대한 고례에 대한 언급도 이의도 제기되지 않고 문효세

문희묘 의례는 주체와 대상이 적합하지 못한 음사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었다.

Ⅲ. 문희묘(文禧廟)의 건립

비록 어린 나이에 후사 없이 죽었더라도 입후를 세워 제사를 지내 준다면 문효세자는 길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유교 제례의 원칙이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당을 건립하고 의례를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는가? 그 명분과 동인은 무엇인가?

처음 문희묘가 지어질 터는 1786년(정조 10) 8월 경모궁 남쪽 담장 밖 백호(白虎) 밖으로 정해졌었다. 이곳은 목사(牧使) 이학원(李學源)의 집터였고 정조는 후한 값을 쳐주라고 하였고 다음해(1787년) 봄이 되면 길일을 점쳐 사당을 지으라고 지시하였다.[25] 그러다가 같은 해(1786년) 11월 4일(음력 9월 14일) 세자의 생모 의빈(宜嬪) 성씨(成氏)가 갑작스레 사망하자 사당의 터를 생모의 사당이 있는 궁 서쪽 담장 밖으로 옮기라는 명을 내린다.

> "하교하기를, 문희묘(文禧廟)를 처음에는 경모궁 남쪽 담장 밖에다 정했었는데, 작년 9월 이후에 신리(神理)와 인정(人情)으로 헤아려 의빈묘(宜嬪廟) 근처로 공간을 정하는 것(卜地)이 실로 편리하고 합당하여 사당 터를 의빈궁(宜嬪宮) 서쪽 담장 밖으로 옮겨 정했었다."[26]

세자 사당을 생모의 사당과 동일한 공간에 두는 것이 신리(神理)와 인정(人情)으로 헤아려 볼 때, 편리하고 마땅하다는 이유였다. 사당을 설립하는 일 자체에

자의 장례가 행해졌다고 지적하면서, 국왕과 문효세자의 상장례를 비교하고, 문효세자의 훙서(薨逝)부터 입묘(入廟)까지 예장의 전반적인 과정 및 특징을 정리하였다. 이현진, 「정조대 文孝世子 喪葬 의례와 그 특징」

25)『일성록』 정조10년 8월 1일(신축); 『승정원일기』 정조10년 8월 1일(신축)

26)『정조실록』 권23, 정조11년 1월 10일(기묘). "敎曰 文禧廟 初定於景慕宮南墻外 昨年九月後 揆以神理人情 就宜嬪廟近處卜地 實爲便當 廟基以宜嬪宮西墻外移定."

대한 해명이라기보다는 모자의 사당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사당 건립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어떤 반대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헌에서는 사당 건립에 관한 논의와 과정만 보일뿐 사당 성립 자체를 반대한 논의나 관련 고례(古禮)및 여귀에 대한 어떤 언급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세자의 죽음에 독살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원흉이 된 사람들을 처단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만 다수 보일 뿐이다.[27] 선왕의 적통이 아닌 왕이 자신의 생부를 종묘에 부묘시키고자 했을 때 큰 논란을 일으켰던 것과 비교하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봉안 대상이 정조의 생부가 아닌 아들이었기 때문에 종묘부묘의 가능성이나 이후 왕통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별다른 논란이 없이 결정된 문희묘 건립은 1788년(정조 12) 12월 25일에 시작하여 1789년(정조 13) 4월 18일 공역을 마쳤다.[28] 1788년 7월 7일 담제(禫祭)를 지낸 지 9개월 후 사당이 완성된 것이다.[29] 사당이 완성되자 정조는 4월 25일 경희궁에 있는 문효세자의 혼궁(魂宮)에서 다례(茶禮)를 행하고 효창묘(孝昌墓)와 의빈묘(宜嬪墓)에서 다례를 행하였다.[30] 그리고 4월 26일, 문효세자의 신위를 새로 지은

---

27) 문효세자가 홍역을 앓다 잠시 회복했다가 갑자기 죽은 것에 대해, 담당 의관들의 처방과 젖을 일찍 끊게 한 유모의 행위를 역적이라 하며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상소와 진언이 잇달았다. 국가의 윤강(倫綱)을 바로 잡고 죽은 세자와 백성들의 맺힌 원통함(神人之憤)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조실록』 권25, 정조 12년 5월 6일(정묘).

28) 『문희묘일기』와 『문희묘영건청등록』에 기록된 구체적인 역사 과정은(營建時日)은 1788년 12월 25일 시작하여(開基) 1789년 2월 19일 정초(定礎)하고, 2월 25일 입주(立柱) 및 상량(上樑)하고, 4월 18일에 끝마쳤다. 『실록』과 『일성록』에는 공역을 마친 4월 18일에 대한 기록이 없고 4월 25일 문희묘가 완성되어 다례를 지낸다는 기록만 있다.

문희묘의 규모는 『문희묘영건청등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문희묘 76칸 반과 의빈묘 45칸으로 모두 121칸 반이다. 기본 구조는 문희묘의 정당(正堂)을 중심으로 하고 전면에 내신문(內神門)과 중신문(中神門)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희묘의 중신문 밖으로는 외대문과 외행각, 제집사방(諸執事房)과 향대청(香大廳)이 있다. 문희묘 정당의 울타리를 경계로 그 좌측에 어재실(御齋室)이 있으며 어재실 뒤에 의빈묘 정당과 내신문이 있다.

29) 문효세자의 대상(大祥)은 1788(정조12) 5월 11일(임신)이었으며, 담제(禫祭)는 1788(정조12) 7월 7일(정묘)에 행해졌다.

30) 『정조실록』 권27, 정조13년 4월 25일(신해). “文禧廟成 上駕臨 召見營建堂郞于齋室

문희묘로 옮겨 봉안하였다. 정조가 친히 구묘(舊廟)에서 고동련제(告動輦祭)를 행하고, 신위를 새로운 사당으로 옮긴 뒤 봉안제(奉安祭)와 다례를 행하였다.[31]

문효세자는 정조가 보위에 오른 지 6년째인 31세의 늦은 나이에 얻은 첫 아들이었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을 정도로 기뻐했다.[32] 늦게 얻은 아들이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죽었고, 독살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왕실은 물론 백성들에게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문희묘의 성립명분은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에서 비롯된 아버지의 마음(情)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해원(解寃)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무런 반대 없이 사당이 설립된 상황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국가의 공식적인 길례의 대상으로 봉안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조선 왕실은 유교의례의 원칙을 준수하며 실천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국가의례는 법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질서를 의미하며 국방과 더불어 국가의 대사(國之大事 在祀與伐)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례[33]로서의 조상 의례는 제물과 음식을 올려 감사하고 신의 흠향을 청한 후, 신이 주는 복을 받는 길하고 상서로운 제사[34]이다. 국가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보여주고 유지하는 예(禮)인 것이다.

詣慶熙宮 行茶禮于文孝世子魂宮 仍臨孝昌墓宜嬪墓行茶禮."

31)『정조실록』 권27, 정조13년 4월 26일(임자). "移奉文孝世子神位于文禧廟 上親行告動輦祭于舊廟 移奉後 親行奉安祭于新廟 又行別茶禮 仍臨宜嬪廟 行別茶禮 中宮殿臨廟 禮畢還宮."

32)『정조실록』 권14, 정조6년 9월 7일(신축). "王子生 … 上曰 始聞爲人父之稱 是可幸也."

33) 길례로 나라의 귀신에 제사한다고 했다("以吉禮祀邦國之鬼神示" 『주례』「춘관종백(春官宗伯)·대종백(大宗伯)」) 길례는 천신(天神), 지기(地祇), 인귀(人鬼)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선시대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제사를 받는 대상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제사 이름도 붙였는데, 천신에 대한 제사를 사(祀), 지기는 제(祭), 인귀는 향(享)이라 하고, 이에 더하여 문선왕(文宣王)에게 지내는 것을 석전(釋奠)이라고 한다(『국조오례서례』 권1, 「길례·변사」). 인귀는 사회・ 문화적 영웅, 여귀 그리고 조상이 해당된다. 사회・문화적 영웅은 백성에게 법을 베푼 자, 죽기까지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한 자, 국가를 위해 힘을 아끼지 않고 안정시킨 자, 큰 재앙을 물리친 자, 큰 환란을 막은 자이다(『예기』「제법(祭法)」)

34) 유교 의례에서 신과 인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헌관이 신에게 올린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시는 음복수조(飮福受胙)이다.

한편, 길례가 행해지는 사당은 조상과 후손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물론 '내묘외묘(內廟外墓)'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당과 묘소는 조상을 모신 동일한 공간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조상의 몸이 있는 묘소는 의례의 공간으로서보다는 체백이 있는 공간으로, 사당은 조상의 영혼이 거하는 공간으로 구분되었다. 길례의 제장으로서 사당의 중요성은 신주의 의미에서 알 수 있다. 신주는 조상의 체백을 대신하는 것으로 사당의례의 중심 상징물이다.[35] 신주를 몸인 백(魄)으로 상정하고 그곳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든다고 여겨지는 반혼(返魂)의 상징물이자 영혼의 저장소로 여겨졌다. 또한 신주는 영혼의 의지처일 뿐만 아니라 해당 의례의 이름표와 같다. 사당에 신주가 봉안되는 때를 기준으로 비로소 사당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해당 의례가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사당'건립이 신이 생성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효세자의 사당을 건립한다는 것은 신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반적인 국가의례의 질서 안에서의 위치, 의례의 정체성은 물론 후대에 법규로 삼아질 수 있는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하는 복잡한 사안이었다.

문희묘의 건립이 국가질서와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을 두 가지로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배경으로, 『춘관통고』에 등재된 네 세자묘－순회묘·소현세자묘·의소묘·문희묘－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생성된 순회묘의 생성동기가 정당성을 획득한 전례이다. 순회묘는 7세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지만 13세의 나이로 요절한 명종의 맏아들 순회세자(順懷世子, 1551~1563)[36]의 사당이다. 명종은 순회세자

35)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정조대에 있었던 윤지충과 권상연이 신주를 소각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전라도 관찰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나아가 평소 살아계신 부모나 조부모처럼 섬겨야 할 신주를 한 조각 쓸모없는 나무라 하여 태워 없애면서도 이마에 진땀 하나 흘리지 않았으니, 정말 흉악합니다. 그러니 제사를 폐지한 것 등은 오히려 부차적인 일에 속합니다."라고 하였다. 『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1월 7일(무인)

36) 순회세자는 명종과 인순왕후(仁順王后) 심씨(沈氏)의 맏아들 이부(李頊)이다. 11세 때 공회빈 윤씨(恭懷嬪尹氏, ?~1592)와 혼인하였다. 순회묘(墓)는 경기도 고양시에 서오릉에 있으며, 고종 대에 순창원(順昌園)으로 격상되었다. 현재 순창원에는 순회세자의 재궁과 공회빈의 빈 재궁만 안장되어있다.

의 삼년상을 치른 후에도 자주 묘궁(墓宮)에 거둥하여 제사를 지냈고, 이에 대해 헌부(憲府)는 두 가지 폐단을 지적하였다.

> "헌부가 아뢰기를, "대체로 제사의 禮는 본래 강쇄(降殺)함이 있으니, 情으로는 막기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禮에는 품절(品節)함이 있어서 조금도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정에 기울어 예를 벗어나(循情踰禮) 일시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폐단이 클 뿐만 아니라 후세에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충분히 강구해야 합니다. 신들이 들으니 순회세자의 삼년상을 치른 후, 묘궁(墓宮)에서 지내는 모든 크고 작은 제사를 폐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법규가 되면 성상(聖上)의 애통해 하시는 지극한 정(哀痛之至情)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대의(大義)로 말한다면 순회세자는 성상에게 신하이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후일의 폐단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당 조(예조)로 하여금 널리 예문(禮文)을 상고하고 대신과 논의하여 정하소서."하니, 답하기를,
>
> "순회세자의 묘궁에서 제사하는 일은 내가 일찍 죽은 것을 슬프게 여겨(哀早歿) 정한 것이니, 예문을 상고하고 대신에게 의논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37]

첫 번째 폐단으로 지적한 명종의 행동은 세자를 잃고 너무나도 '애통해 하시는 지극한 정(哀痛之至情)'에서 나온 것이지만, '대의(大義)'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순회세자는 신하가 되기 때문에 예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폐단으로 지적한 것은, 명종의 친제가 법규로 되면 훗날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전례(前例)로 삼아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죽은 세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국가질서에 위배되는 중대한 일로, 사적인 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

37) 『명종실록』 권31, 명종 20년 9월 10일(계묘). "憲府啓曰 凡祭祀之禮 自有隆殺 在情雖有所難遏者 而禮有品節 不可少越 苟或循情踰禮 創開一時之制 則非徒貽弊無窮 亦不得無議於後世 不可不熟講處之 臣等伏聞 順懷世子三年後 墓宮凡大小祭 仍行不廢 永爲恒規 此實出於聖上哀痛之至情 然以大義言之 則順懷於聖上 乃是臣子 大有所未安 而後日之弊 亦不可不慮 請令該曹 廣考禮文 議于大臣 商確以定 答曰 順懷墓宮祭事 予哀早歿而定之 不須考禮文議大臣也 故不允."

순회세자의 제사문제는 이후 광해군대에 다시 공론화된다. 구체적으로 입후문제와 국가에서 해당 의례를 담당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홍문관에서는『두씨통전(杜氏通典)』을 근거로 순회세자묘 의례를 국가에서 주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근거는 당나라 개원(開元) 3년에 우습유(右拾遺) 진정절(陳貞節)이 은(隱)·장회(章懷)·의덕(懿德)·절민(節愍) 네 명의 태자 사당에 관(官)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의례를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상소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태상박사(太常博士) 단동태(段同泰)가 찬성한 내용이다. 당시 반대한 입장은 사당을 따로 건립할 수 있는 명분은 백성에게 공(功)을 세우거나 당대에 업적을 세운 경우뿐이라는 기준을 내세웠다. 이에 반해 찬성한 의견은 살아생전 어떤 공이나 업적이 없어도 '은혜(恩)'를 베푸는 차원에서 사당을 따로 만들어 모실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제왕이 자손을 제후로 봉하고 모토를 나누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였다.[38]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정(情)의 발로, 즉 '은혜와 인정'을 베푸는 측면에서 합법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문희묘의 건립명분으로 위와 같은 순회묘의 성립 배경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명종 대 이후에도 순회묘 의례가 유지된 점은 주요한 단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문희묘의 건립 배경으로『춘관통고』의 편찬배경과 성격을 보고자한다. 국가의례는 법전과 동일한 성격과 위상을 가지며 국가질서 유지를 위한 지침서와 같다. 따라서 그 변화와 지향점은 해당 왕대의 정치적 분위기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기틀과 질서의 기준이 되는 법전과 국가사전의 재정비가 요구되었다. 본격적인 정비는 숙종 대를 시작으로 영조 대와 정조대까지 이어졌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숙종 대에 탕평론이 대두하였고 영조 대에 탕평책으로 정책화하여 정조대까

38)『광해군일기』권18, 광해군 1년 7월 27일(병오). "杜氏通典 開元三年 右拾遺陳貞節以隱章懷懿德節愍四太子廟不合官供祀享 … 太常博士段同泰議曰 隱太子等竝特降絲綸 別營祠宇 義殊太廟 恩出當時 借如逝者之錫蘋蘩猶生者之開茅土 寵章所及 誰謂非宜 且自古帝王封建子孫 以寄維城之固 咸登列郡之榮崇 豈必有功於人立事於代 生者曾無異議 死者輒此奏停 雖存沒之跡不同 而君臣之恩何別 此則輕重非當 情禮不均 天道固是難誣 人情孰云非宜 傳曰知道 此草記下禮曹."

지 계승되었다.[39] 탕평책으로 인해 왕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는 강력한 왕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가의례에도 발현되었다.[40]

숙종 대에 이루어진 왕실의례 정비는 진전(眞殿)인 남별전[南別殿, 영희전(永禧殿)으로 개칭]과 선원전(璿源殿)의 재정비, 어진 모사, 선조(宣祖)의 생부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1530~1559) 의례의 재정비, 종묘의 재정비[41] 등이다. 영조 대에는 『국조속오례의』가 편찬되었는데, 여기에 영조의 생모이자 후궁이었던 숙빈 최씨(淑嬪 崔氏, 1670~1718)를 제향한 육상묘[毓祥廟, 육상궁(毓祥宮)으로 개칭]의례가 등재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42] 왕의 생부를 국가의례로 제향한 전례는 있었지만, 후궁이었던 왕의 생모를 봉안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공식적인 의례의 대상으로서의 왕의 사친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전례가 될 수 있었다.[43]

---

39)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93), 127-128.

40) 숙종 대~정조대까지 새롭게 정비된 대표적인 길례는 종묘와 사직으로 1697년(숙종23)에 『종묘의궤(宗廟儀軌)』, 1741년(영조17)에 『종묘의궤속록(宗廟儀軌續錄)』이 편찬되었고, 1783년(정조7)에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가 편찬되었다. 강문식은 사직제례의 변화 중 기곡제(祈穀祭)의 시행에 주목하여, 기곡제를 왕이 직접 행한 것과 친행을 위해 궁 밖으로 나올 때 도성민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로 이용한 것은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군주임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의 반영으로 보았다.(강문식, 「肅宗~正祖代 社稷 제도 정비와 『社稷署儀軌』 편찬-규장각 소장 『社稷署儀軌』를 중심으로-」; 정옥자 외 『조선시대 문화사(상)-문물의 정비와 왕실 문화』 (일지사, 2007), 178-205.) 조선 후기 왕의 친행의 증가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 최종성은 조선후기에 친행 기후의례가 확대된 사실을 탕평군주의 권력의 실현과 결부시키는 것은 재고할 여기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왕의 권력의 표출이기보다는 종교적인 기복과 정성의 발현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았다.(최종성,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131-132.)

41) 이현진에 의하면, 조선후기 종묘 정비는 현종·숙종·영조 대에 걸쳐 추진되었다. 17~18세기 종묘 정비의 주된 안건들은 조선전기에 발생한 성리학적 의리명분에 위배된 사건들, 양란을 겪으며 훼손된 신주, 처음부터 잘못 기록되어 논쟁이 된 위판·축문들의 정정 및 대명의리론의 강화로 새롭게 조명된 일련의 종묘 관련 사항들이 해당된다.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42) 숙빈 최씨의 사당은 영조 원년(1725) 12월 23일, 경복궁의 북쪽에 건립되어 숙빈묘(淑嬪廟)라 하였다. 영조 3년(1727), 숙빈묘와 묘소인 소령묘(昭寧墓)에 전알(展謁) 의식이 마련되었고, 영조 20년(1744)에 『국조속오례의』에 '배육상묘의(拜毓祥廟儀)'와 '배소령묘의(拜昭寧墓儀)'가 등재되었다. 영조 29년(1753)에 '육상묘'가 '육상궁'으로 격상되었다.

43) 임민혁은 영조가 사친 추숭을 단행한 정치적 배경과 의미를 효제(孝悌)와 탕평정치의

『국조속오례의』에 묘소에서의 세자묘 의례가 등재된 것도 이와 연관해서 볼 수 있다.[44]

또한 영조 대에 주목할 만한 것은 1766년(영조42) 국가의례와 의시(議諡)를 관장하던 기관인 봉상시(奉常寺)의 업무 내용을 정리한 『태상지(太常志)』이다. 여기에 각 제사 대상에 올리는 제품(祭品)이 적힌 부분 중 "묘(廟)"영역에 "소현(昭顯)"·"효장(孝章)"·"의소(懿昭)"가 기록되어 있다.[45] 이는 세자묘, 즉 사당에서의 의례가 국가차원에서 행해졌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국조속오례의』(1744)가 『태상지』보다 먼저 편찬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속오례에는 묘소에서의 의례만이 국가의례로 등재되었고, 세 세자의 사당에서의 의례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가사전의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면 세 의례는 반-공식적인 의례, 즉 정사(正祀)에 준하는 준정사(準正祀, semi-proper ritual)[46]였다고 볼 수 있다. 『춘관통고』의 문희묘를 기점으로 세 세자의 사당의례가 비로소 국가의례에 등재되었고 정사로 자리 잡은 것이라 할 수

연관성으로 보았다. 영조가 '요순(堯舜)의 효제의 도'를 통치논리로 하여 정국운영을 구상 한 것은 탕평정치를 표방하며 내세운 군부일체(君父一體)의 논리라는 것이다. 즉 이것은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위협 받아온 영조에게 형제상속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신하는 당파의 이해관계를 추월하여 국군(國君)을 아비처럼 받들어 충성스런 공복으로 수렴되도록 하는 탕평의 근거논리였다고 한다. 임민혁, 『英祖의 정치와 禮』 (민속원, 2012), 15-56.

44) 『국조속오례의서례』 권1, 「길례·변사」 구체적인 대상은 이 글 각주3)을 참고할 것.

45) 『태상지』 권3, 「사전(祀典)」
'묘' 항목에 순회세자 사당이 빠진 것은 숙종 4년(1678) 신주가 예안(瘞安) 되어 더 이상 사당에서의 의례는 지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태상지』의 "墓"항목에는 순회(順懷)·소현(昭顯)·민회(愍懷)·효장(孝章)·의소(懿昭)가 기록되어 있다. 사당은 신주가 예안되면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았지만 묘에서는 지속적인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墓"항목에는 순회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조속오례의』의 세자묘의 대상인 순회묘·소현궁묘·민회묘·효장묘묘와 비교하면, 의소만 제외하고 동일하다. 영조의 손자 '의소'는 1752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속오례의 세자묘 항목에는 없으며 『태상지』에 올라가 있다.

46) 이 글은 정사에도 음사에도 편입되지 않았던 의례의 상태를 기존의 정사/음사의 이분법적인 구조로는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사에 준하는 의례의 중간 단계를 '준정사'라고 명명한다. 권용란, 『조선시대 왕실 조상신에 대한 연구』 (민속원, 2015.), 31.

있다.

한편, 『춘관통고』에는 선왕의 뜻을 계승하여(繼志述事) 정사를 살피고자한 정조의 의도가 담겨있다. 『춘관통고』는 『국조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를 바탕으로 각 왕대별 예(禮)를 모아서 정리하고 해당 왕대에 새롭게 마련된 의례를 담고 있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국가사전으로, 왕실 의례 항목들—능침·궁묘·진전·어진—이 대폭 증가되어 있다.[47]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왕실관련 의례들이 공식적인 것으로 무리 없이 마련될 수 있는 분위기가 숙종 대부터 조성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48]

위와 같은 두 가지 배경의 토대 위에서 문희묘가 공식적인 사당으로 합법화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사전에 이전 왕대의 세자에 대한 의례도 함께 공식화되었고 이후의 동일 사례의 전례이자 모델이 된 것이다.정조 대에 생성된 문희묘는 1870년(고종 7) 영조의 잠저였던 창의궁 내에 있던 의소묘의 별묘(別廟)로 이전되었고, 1900년(고종 37) 5월 의소묘와 함께 남부 훈도방에 있는 영희전으로 다시 이전되었다. 1908년(순종 1) 7월23일, 문희묘의 신주는 의빈궁, 경수궁(慶壽宮), 영소묘(永昭廟, 의소묘의 개칭)와 함께 예안되었다.[49]

---

47) 정조대 전반적인 의례정비와 춘관통고의 의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지영, 「18세기후반 국가전례의 정비와 『춘관통고』」, 『한국학보』 30/1 (한국학보 일지사, 2004), 95-131. 을 참조할 것.

48) 왕실의례가 국가사전에 다수 책정된 것에 대해, 김지영은 정조대의 왕실 의례의 증가로 국왕과 사정(私情)으로 연결되어 있는 왕실이 더욱 공적인 영역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길례 이외의 시험과 군례(軍禮)의 증가는 '군사(君師)'로서 국왕의 위상을 갖추려 했던 탕평정치기에 군주의 위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진단하였다. 김지영, 「18세기후반 국가전례의 정비와 『춘관통고』」, 123. 최근에 주목할 만한 관점으로, 이욱은 왕실의례가 유교 경전 뿐 아니라 시속(時俗)에 의존하기 때문에 관습을 국가사전에 수용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보고, 이것을 중국 중심의 유교문화가 조선의 토착문화를 수용하고 정착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욱, 『조선왕실의 제향 공간-정제와 속제의 변용』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16.

49) 『순종실록』 권2, 순종 1년 7월 23일(양력).
이때, 의빈궁을 제외한 나머지 궁과 사당은 모두 국유로 이속되었다. 이후 창의궁 터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직원사택이 건립되었고 광복 후 적산으로 재분할되어 개발되었다. 현재 문희묘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Ⅳ. 문희묘(文禧廟) 의례의 형성과 위격

『춘관통고』에 등재된 문희묘는 순회묘·소현묘·의소묘와 함께 '궁묘'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50] 그런데 『춘관통고』에는 문희묘가 궁묘의 항목에 속한 것으로만 되어 있고 해당 의주(儀註)와 의절(儀節)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는 문희묘 공역[1788년(정조 12) 12월 25일~1789년(정조 13) 4월 18일] 이 『춘관통고』가 편찬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사당의 건립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의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마련하기 전에 『춘관통고』가 편찬되었기 때문에, 문희묘 의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종대의 『대한예전』에서도 문희묘를 비롯한 '세자묘' 의례 항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한예전』에서 문희묘 의례는 '속제(俗祭)'로 분류되어 있다. 『국조속오례의』에 등재된 세자묘(世子墓) 의례가 속제로 분류되어 있던 것과 동일하다.[51] 속제는 의례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나누는 기준에는 맞진 않지만 그렇다고 폐기할 수도 없었던 왕실의 조상과 관련된 의례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시속(時俗)과 인정의 차원에서 이전 시대에 행해지던 의례의 잔재였다고 할 수 있다. 속제는 국가가 제주가 되었지만 종묘처럼 유교의 예제를 따르는 정례(正禮)와 달리, 왕실의 사적인 혈연이 우선시되어 예식화가 추진된 된 정례(情禮)라고 할 수 있다. 『태상지』에 따르면, 대중소사와 달리 속제에는 밀과(密果)를 쓰고 희생(牲)·포(脯)·해(醢, 젓갈)을 쓰지 않으며, 폐백(幣)이 없다.[52] 대중소사에 비해 제물이

---

50) 『춘관통고』 권27, 「길례·궁묘」

51) 이욱은 『국조속오례의』의 '속제'를 종묘와 동일하게 선왕과 선후에게 지내는 제사이지만 단지 공간과 제물의 구성만 종묘와 다른 것이라 하였다. 이욱, 『조선왕실의 제향공간—정제와 속제의 변용』, 13. 강제훈도 조선 초기 종묘와 속제의 구분을 공간과 제상(祭床)의 구성방식의 차이에 두었다. 강제훈, 「조선 초기 俗祭 祭祀床의 구성과 그 특징」, 『한국사학보』 60 (고려사학회, 2015), 209-241. 하지만 조선 후기 『국조속오례의』와 『대한예전』의 속제의 대상은 종묘에 모신 선왕과 선후와는 전혀 다른 대상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속제에 대한 정의와 범위도 조선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그 변화와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52) 『태상지』 권2, 「사전(祀典)」
밀과는 밀가루에 기름과 꿀을 넣고 반죽하여 직육면체 모양으로 만들어 기름에 노란색

소략했다.

조선시대 국가사전에 등재된 속제의 대상들은 <표1> 과 같다.

<표1> 국가사전의 속제의 대상[53]

	속제(俗祭)	궁묘(宮廟)
『국조오례의』	문소전(文昭殿)·진전(眞殿) ·의묘(懿廟)·산릉(山陵)	
『국조속오례의』	세자묘[世子墓－순회묘(順懷墓) ·소현궁묘(昭顯宮墓)·민회묘(愍懷墓) ·효장묘묘(孝章廟墓)] ·영희전(永禧殿)·장령전(長齡殿)	
『춘관통고』		조경묘(肇慶廟)·대원군묘(大院君廟) ·저경궁(儲慶宮)·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순회묘(順懷廟) ·소현묘(昭顯廟)·의소묘(懿昭廟) ·문희묘(文禧廟)
『대한예전』	진전(眞殿)·산릉(山陵) ·각궁원묘묘(各宮園墓廟) ·부군사 사직 문묘 포제 여제 영제 (府郡祀 社稷 文廟 酺祭 厲祭 禜祭)	

구체적으로『국조오례의』에 속제로 분류된 대상은 문소전·진전·의묘·산릉이다.『국조속오례의』는 진전이었던 영희전·장령전·세자묘이다. 세자묘의 구체적인 대상은 순회묘·소현궁묘·민회묘·효장묘묘이다.『춘관통고』는 다른 국가사전들과 편집방식이 달라 '길례' 영역에 사직, 종묘를 비롯한 진전과 궁, 능침, 궁묘가 각각 개별 항목으로 묶여있다. 특이한 점은 궁묘의 영역에 순회묘·소현묘·의소묘·문희

이 되도록 튀긴 것이다. 크기에 따라 중박계와 소박계로 나뉜다.『태상지』권5,「찬품(饌品)·조과식(造果式)」

53)『국조오례서례』권1「길례·변사」;『국조속오례의서례』권1,「길례·변사」;『춘관통고』권27,「길례·궁묘」;『대한예전』권2,「길례·변사」

『세종실록오례의』는 속제항목이 따로 없었지만, '시일' 조에서 종묘·계성전(啓聖殿)·문소전(文昭殿)·건원릉(健元陵)·제릉(齊陵)·준원전(濬源殿)·제(諸)산릉(山陵)에 제사 지낸다고 하였다. 종묘이외의 대상들이 후대 속제의 대상이 된다.

묘가 있는데, 의소묘만 소사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다.[54] 앞서 살펴본 대로 문희묘가 완성되기 전에 『춘관통고』가 편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희묘 의례도 소사로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고종 대에는 다시 속제로 분류되어 있다. 네 의례사전에 나와 있는 속제의 대상은 종묘의 선왕과 선후를 봉안한 진전·산릉·세자 사당과 묘소 등이며, 세자를 대상으로 한 의례가 속제로 분류된 것은 영조 대부터이며, 이때 세자묘는 묘소에서의 의례이다.

'궁(宮)'보다는 '묘(廟)'가, '원(園)'보다는 '묘(墓)'의 위격이 낮았는데, 문희묘는 초기 위격 그대로 유지되었다. 문희묘는 다른 왕실 조상처럼 사후에 품계를 높이거나 시호를 붙이지 않았고, 묘(廟)가 궁(宮)으로 격상되지 않았다. 그런 반면, 『춘관통고』 에 함께 등재된 세자묘—순회묘·소현묘·의소묘—들과는 달리, 문효세자의 사당에만 '문희'라는 묘호가 있다. 당시 전례로 삼은 것은 성종의 생부 의경세자(懿敬世子, 1438~1457)의 사당을 효정묘(孝靖廟)라 일컫고, 묘소는 의묘(懿墓)라 했던 것과 다른 궁·원에 묘호가 있다는 것이었다. 문효세자의 사당에도 이름을 따로 짓는 것이 예라는 논리였다.[55] 전거로 든 사례들이 모두 속제에 속한 의례들이었다.

문희묘 의례는 1789년 4월 20일 입묘(入廟) 후, 매월 음력 초하루에 조상에게 올리는 삭제(朔祭)를 하지와 동지에만 하는 중삭제(仲朔祭)로 결정된다.[56] 고종 대에는 시일이 춘분·추분·하지·동지에만 하는 사중삭향(四仲朔享)으로 되어 있다.[57] 간혹 전작례(奠爵禮)를 행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전작례는 술을 올리는 비교적 간단한 의례였다. 그리고 의소묘에 의거하여 기신제(忌辰祭)를 행하였다.[58] 문헌에서 확인되는 전례로 삼은 의례는 의소묘의 기신의례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적

54) 『춘관통고』 권27, 「길례·궁묘」
55) 『정조실록』 권21, 정조 10년 6월 20일(임진).
56) 『일성록』 정조 13년 4월 20일(병오).
57) 『대한예전』 권2, 「대한예전서례·길례·변사」
영조대의 세자묘 의례의 시일은 속절(俗節)—정조,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일—과 기신(忌晨)이었으며, 묘소에서 하며 대수가 다 되면 지내지 않는다고 했다.(『국조오례서례』 권1, 「길례·변사」)
58)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5월 10일(병인).

용한 특정한 의례는 없어 보인다.[59] 아마도 속제로 분류된 의례들에 의거해서 문희묘 의례를 마련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세자를 위한 의례가 별도로 마련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왕실 조상 의례를 시일을 줄여서 행한 것으로 보인다.

문희묘 의례 중 중삭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확인할 수 없다. 『대한예전』에도 문희묘에서 행해진 삭제의 절차에 대한 기록이 없다.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왕실 조상들에게 행하던 "삭망제"를 참고해서 의례의 절차를 참고해보면, 재계(齊戒) 3일, 1일 전 진설(陳設)을 하고, 의례 당일 초헌→아헌→종헌→음복→철변두(撤籩豆)→망예(望瘞)의 순이다. 전 과정은 조선시대 내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문희묘 의례의 위격 및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은 축문에서 의례의 주체인 정조와 대상인 문효세자를 각각 무엇으로 부르는가이다. 축문 호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의례에서 두 대상간의 관계를 설정해주고 위격을 표명하고 규범화하는 것이다. 의례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 호칭은 해당 의례의 성격과 목적을 가늠하게 하며 의례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로 『춘관통고』에는 문희묘 의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편찬된 『대한예전』을 참고해서 유추해보고자 한다. <표2>는 고종 대 『대한예전』에 기록된 문희묘 '사중삭향'의 축문호칭이다.

<표2>『대한예전』의 문희묘 사중삭향(四仲朔享) 축문 호칭[60]

문희묘	호칭	의례주체(祭主)	원문	황제휘(皇帝諱) (遣臣某官某)	
			해석	황제 ○○가 (○부서 ○○를 보낸다)	
		의례대상(神位)	원문	감소고우(敢昭告于)	문효세자(文孝世子)
			해석	감히 문효세자께 밝히 고합니다	

59) 최초의 세자사당에서의 의례를 의경세자의 사당이었던 의묘(懿廟)로 볼 수도 있다. 의경세자는 살아생전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다는 점에서는 문효세자와 동일하다. 하지만 아들인 성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덕종(德宗)으로 추숭되어 종묘에 봉안되어 세자로서가 아닌 왕의 생부로 제향 되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른 의례였다고 할 수 있다.

60) 『대한예전』 권2, 「길례·축판」

의례 주체인 왕을 '황제 휘'로, 대상 신인 문효세자를 '문효세자'로 칭하고 있다. 의례주체와 대상이 '황제—세자'로 설정된 것이다. 문효세자는 '세자'의 신분으로 되어 있다. 정조 당시 축문 호칭을 유추하기 위해 영조 대 당시 자신의 세손을 제사했던 영조와 의소세손의 축문호칭을 살펴보자. 영조 대에 편찬된『국조속오례의』의 '세자묘'의례 중 의소세손의 축문호칭[61]을 참고하면, '국왕－의소세손'으로 되어 있으며, 이후『춘관통고』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다.[62] 두 의례사전을 참고하면, 문희묘 의례의 축문 호칭도 정조대부터 이후 왕대까지 변함없이 '국왕-세자'의 관계로 설정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희묘 의례의 축문호칭이 종묘의례와 어떻게 달랐는지 <표3>의 종묘 의례의 축문호칭과 비교해보자.

<표3>『국조오례의』의 종묘 의례 축문 호칭[63]

종묘	호칭	의례주체(祭主)	원문	효증손(孝曾孫) 사왕(嗣王) 신(臣) 휘(諱)	
			해석	효증손인 사왕 신 ○○은	
		의례대상(神位)	원문	감소고우(敢昭告于)	모조고(某祖考) 모대왕(某大王)
			해석	감히 ○○조부 ○○대왕께 밝히 고합니다	

의례주체를 '효증손 사왕 신 휘'라 하였는데, '효증손인 왕위를 이은 신 ○○는'라는 의미이다. '효증손'은 친(親)이 다한 선왕에 대한 의례 주체를 칭하는 용어이다. 의례 대상의 호칭인 '모조고 모대왕'은 '조부 ○○대왕께'라는 의미이다. '모조고'의 '조고'는 조부의 총칭이다. 의례 주체와 대상의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은 '효증손'과 '모조고'이며 부자관계인 직계 혈통의 친속을 나타낸다. 종묘와 달리, 문희묘의 축문 호칭이 '아버지－아들'의 관계가 아닌 '왕－세자'로 설정된 것은 종묘의례에서 선왕과 현왕이 생물학적인 부자관계로 설정되기 때문일 것이다.[64] 정

61)『국조속오례의서례』권1,「길례·변사·축판」
62)『춘관통고』권27,「길례·궁묘」
63)『국조오례서례』권1,「길례·축판」
64) 이와 관련해서 성종이 자신의 생부 의경세자를 추숭하고자 했을 때 쟁점화 된 축문 호칭 문제를 참고해볼만한다. 성종이 자신의 생부를 종묘에 부묘하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친 문제가 축문 호칭이었다. 성종은 종묘에 있는 선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조는 왕위를 이를 후대 왕하고만 부자관계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축문 호칭에 의거하면, 문희묘 의례는 정조(왕)의 아들이 아닌 살아생전 조선왕실의 세자의 신분 그대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다.

한편, 1786년(정조 10년) 윤 7월 19일 문효세자를 효창묘에 장사지내고, 정조가 친히 신주를 쓰고 초우제를 지냈다.[65] 문효세자의 신주 함중(陷中)에, "조선국 문효세자 휘모신주(朝鮮國文孝世子諱某神主)"라 쓰고, 신주의 전면에는 "문효세자 신주(文孝世子神主)"라 썼다. 이때 만들어진 신주가 그대로 사당에 봉안되었다.[66] 국왕의 경우, 우제(虞祭)에서는 뽕나무로 만든 우주(虞主)를, 연제(練祭)에는 밤나무로 만든 연주(練主)를 만들고 이것을 종묘에 봉안하는 것과는 달랐다. 문효세자의 신주는 왕실 조상들과 달리 불천지위(不遷之位)로 봉안되지 않았고, 5세(世)가 지나서 예안 되었다. 종묘의 친진(親盡)을 따라 5세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순회세자의 신주를 5세를 지나 숙종 대에 예안한 것을 참고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희묘 의례는 단독으로 제향 되었다는 점에서 세자가 아닌 왕자와 공주, 옹주들의 죽음과는 구분되었다. 다시 말해, 입후를 세우지 않고 국가가 제주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구별된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조선후기에는 봉작을 받기 전에 사망한 대군·왕자·그리고 출가하기 전에 사망한 공주·옹주들을 합동으로 제사지내는 사당 '수진궁(壽進宮)'이 있었다. 수진궁은 궁가(宮家)로서 조선 전기에는 왕의 자녀와 후궁의 거주공간으로, 조선후기에는 거주 공간 외에도 왕실의 내탕을 담당하고 왕실일족의 재정을 운영하며 사후 제사까지 담당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하는 가사(家舍)로 변모하였다.[67] 조선 후기의 수진궁과 문희묘는 왕실

계승했기 때문에, 선왕을 부모로 삼고 낳아준 부모를 일컬어 백숙부모(伯叔父母)라 해야 한다는 禮를 따라야 했다. 결과적으로 성종과 생부의 축문호칭은 '조카—큰아버지'의 관계로 설정되어 '효질(孝姪)—황백고(皇伯考)'의 호칭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권용란, 「조선시대 왕의 사친(私親)의례와 축문(祝文)-의묘(懿廟) 의례의 축문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35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9), 132-168. 를 참조할 것.

65) 『정조실록』 권22, 윤7월 19일(경인).

66) 『일성록』 정조 10년 윤7월 19일(경인).

관련 사당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문희묘는 문효세자의 신주만 봉안한 독립된 사당이었고 왕의 친제가 있었던 공식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왕손들의 사당 의례와는 구별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문희묘 의례의 위격 및 특징은 생전과 동일하게 '세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국가의례를 통해 정조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조선 왕실의 세자로 공식화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후의 문효세자를 기존의 왕실 조상의 범주에 편입시켜 그 위격을 설정하기 보다는 독립된 영역과 계보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좀 더 유연하게 본다면, 살아있었다면 사후에 왕실 조상으로 봉안될 것이 예정되었던 존재이자 정조 이후의 왕들에게는 위 세대가 된다는 점에서, 왕실 조상의 범주를 확장시켜 '무후자 왕세자'라는 계보가 생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전 시대와 달리, 사당에서의 문희묘 의례를 마련한 의미, 즉'세자'로서의 위상을 공적으로 드러낸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왕권강화의 의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숙종 대부터 시작된 탕평에 의한 왕권강화가 정조 대까지 이어지면서 왕실의 사적인 성격의 의례로까지 발현된 것이다. 영조는 재위 기간 내내 미천한 신분의 어머니와 적장자가 아니라는 왕위 계승의 정당성에 도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후궁이었던 생모에 대한 제사를 공식적으로 실천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영조 대에 묘소에서의 세자묘 의례를 속오례의에 등재하고 『태상지』에서 세자들의 묘지와 사당에 올리는 제사의 제물을 관리하였던 것을 상기해볼 수 있다. 이러한 영조 대의 전례는 정조의 의례적 결정권이 당연시될

67) 정정남에 의하면 수진궁은 본래 예종의 둘째 아들인 제안대군(齊安大君)의 저택으로 조선시대 한성의 중부 수진방(壽進坊, 현재 종로구 수송동 부근)에 있었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던 정도전의 사택이 있었던 곳이다. 인조 15년(1610)부터 "수진궁"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다는 것을 볼 때, 중종의 잠저였던 본궁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고 전란이 수습된 후에 다시 건립되어 수진궁이라 불렸고, 이후 원당을 세워 이전에 제사지내던 평원대군부부, 제안대군 부부 등을 제사지내며 왕대비와 왕비의 내탕을 마련하는 곳으로 기능이 변모하였다고 한다. 정정남, 「조선시대 壽進宮의 기능과 주변 박석[磚石]길의 의미해석」,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추계학술발표대회자료집, 2011), 175-180.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정조가 즉위하면서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천명하고 장헌세자(莊獻世子, 고종 대에 장조로 추존)로 올리고, 묘소도 수은묘(垂恩墓)에서 영우원(永祐園, 이후 화성으로 천장하여 현륭원으로 개칭)으로 격상시켰던 것을 이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희묘 의례를 공적인 의례로 실천한 또 하나의 의미를 유교의 공고화가 이루어진 조선후기라는 시기에서 찾고자 한다. 17세기 이후부터 부계중심의 가계의식이 이루어지면서 문중 조직과 종법제도의 강화가 나타났다. 장자는 그 아버지의 주요한 후사로서 그리고 조상 봉사의 주요한 주재자로서 특권을 가진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68] 이에 따라 조상 의례는 보본반시의 명분으로 조상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정체성, 사회적인 위상, 경제적인 분배문제, 그리고 사회적 연대와 연관된 하나의 견고한 질서이자 규범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회적 변화의 분위기는 왕실에도 영향을 미쳤고 왕실의 가계와 관련된 일들이 이루어졌다. 1681년(숙종 7)에 처음 간행된『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의 편찬과 간행은 그 대표적 사업이었으며, 여기에는 왕실의 족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종친과 조신에게 반포하였기 때문에 왕실과 전주 이씨들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매우 큰 작용을 하였다.[69] 이후 영조는 전주 이씨의 시조 이한(李翰)의 사당인 조경묘(肇慶廟)를 건립하고 국가의례로 책정하였다. 국가를 건국하는데 공을 세운 역대 시조들이 아님에 불구하고 왕실의 시조에 대한 의례를 공적인 영역으로 드러낸 것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한 것, 즉 왕권강화와 맥을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부계중심의 조상 의례로의 변화는 왕실의 시조를 찾고 드러내는 일 뿐만 아니라 적장자로서의 '세자'의 위격과 명분을 강조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70] 물론 종법제도와는 상관없이 세자는 한 국가를 이끌어갈 지존으로서의 위엄

68) 마르티나 도이힐러,『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이훈상 옮김, (아카넷, 2003), 248.
69) 이욱,「조선시대 왕실의 시조(始祖)와 조경묘(肇慶廟) 건립」,『조선시대 사학보』38 (조선시대사학회, 2006), 182.
70) 왕실에서의 장자의 개념과 특권은 조금 달랐다. 김지영에 의하면, 왕가에서도 사가와 같이 적서에 대한 구별은 있었으나, 후궁의 아들과 딸로 태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이다. 세자는 다른 왕손들과 구별된 의례와 교육을 받았다. 왕손이 태어나면 태를 처리하는 일련의 의례인 장태(藏胎)의례를 행하였는데, 세자는 태를 보관할 태봉지를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다른 왕손들과 구별되었다.[71] 하지만 이것은 왕위에 오를 잠재적인 왕이라는 전제로 한 것이지 사후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세자의 위상을 지속시킬 사후 의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성된 문희묘 의례는 조선의 왕통을 이어 장차 국가와 왕실의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갈 적장자라는 문효세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기억하게 하는 의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희묘 의례를 통해서 문효 '세자'를 생전과 동일하게 사후에도 왕실의 자손들과 구별하고 적장자로서의 자격을 공고히 하였고, 다른 왕실 '조상'처럼 국가와 왕실을 향한 복을 기원하는 길례의 대상으로 봉안한 것이다. 한 국가를 이끌어갈 왕위 계승자이자이면서 동시에 왕실 계보의 구심점으로서의 세자의 위상은 조선후기 시대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춘관통고』에 함께 등재된 의소묘가 속제에서 소사로 격상되었다는 사실을 단서로 생각해볼 수 있다.[72] 여기에 문희묘 의례의

차별을 심하게 받진 않았다. 숙종 대부터 정조대까지 왕비소생의 원자가 태어나지 않았다. 17세기 후반 이후 100여 년 동안 왕실에서는 후궁의 몸에서 왕의 맏아들이 태어났을 때 원자로 정호하는 '元子定號'와, 왕비의 불임이 확실한 경우 왕위 계승자를 얻기 위해 양반가의 딸 가운데 후궁을 간택하고 아들을 낳으면 원자로 삼고 왕비의 아들로 취하도록 하는 '內殿取子'라는 문화전통이 창출되었다. 사가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가의 계승방식과 달리, 왕가에서는 왕비가 불임인 경우, 후궁이 낳은 왕의 맏아들도 왕위 계승권자인 원자가 될 수 있었다. 아버지가 왕이면 적장자가 없을 경우 서장자를 원자로 정호하는 방식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김지영, 「18세기 후반 정조대 '元子'의 탄생과 胎室의 조성-『胎峯謄錄』과 『元子阿只氏安胎謄錄』을 중심으로-」, 『장서각』 3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112-113.

71) 태봉 후보지는 왕자녀의 왕위계승여부와 적서 여부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었는데, 원자와 원손과 같은 왕위 계승자는 1등, 왕비소생인 대군과 공주는 2등 태봉, 후궁소생인 왕자와 옹주는 3등 태봉으로 구분하였다. 김지영, 「18세기 후반 정조대 '元子'의 탄생과 胎室의 조성-『胎峯謄錄』과 『元子阿只氏安胎謄錄』을 중심으로-」, 120.
문효세자의 태봉지는 1등 후보지였던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에 1783년(정조 7)에 조성되었다. 2016년 4월 28일 경상북도의 기념물 제173호로 지정되었다.

72) 이와 관련하여 영조 대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을 눈여겨볼만한다. 이 책은 국왕과 왕비의 상례만을 다루었는데, 『국조속오례의』 편찬 이후 왕실의 상례 중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보완하고 증보하여 1752년(영조 28)에

의절과 의주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의소묘와 함께 소사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V. 결론

이 글은 조선왕실의 종교문화를 왕실의 조상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문효세자로 대상을 달리해서 살펴보았다. 사당 문희묘와 문희묘 의례가 형성 당시 음사로 여겨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논란과 시행착오 없이 형성되고 실천되었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새로운 의례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질서와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당과 의례의 형성 배경과 특징 및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당 형성의 배경을 두 가지로 보았다. 동일 사례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순회세자에 대한 제사가 간접적인 선례가 되었다고 보았고, 영조 대까지 세자관련 의례들이 국가 주관으로 반-공식적으로 실천되어온 축척된 경험도 배경으로 보았다. 또한 문희묘 의례의 위격과 특징이 생전과 동일한 세자의 신분이었고 고종 대 국가의례 개편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문희묘 의례'의 존재 그 자체가 유교 의례의 원칙과 실제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것이자 음사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이를 넘어서 조선왕실의 '세자'라는 독립된 위상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희묘 의례가 형성되어 '문효세자'가 공적으로 부각된 의미를 두 가지로 보았다. 숙종 대부터 시작된 탕평에 의한 왕권강화와 조선후기 유교의 공고화로 인한 문중조직과 종법제도가 강화된 시기적인 분위기에서 찾아보았다.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물려 문효세자에 대한

처음 간행되었고, 1757년(영조33)에 재 간행되었다. 이 책의 부록에는 의소세손의 상례 절차가 영조가 내린 수교(手敎)의 형식으로 수록되어있다. 의소세손도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점에서 문효세자와 동일한 사례에 속한다. 영조 대에 이미 국왕과 왕비이외의 '세자'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법제화의 시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의례는 생전과 동일하게 ‘세자’의 위격으로 국가의례로 채택되었고 독립된 계보를 형성하였다.

주제어: 문효세자(文孝世子), 문희묘(文禧廟), 문희묘(文禧廟) 의례,
무후자(無後者) 왕세자의 죽음, 유교 제례, 유교의 죽음관

원고접수일: 2020년 5월 3일
심사완료일: 2020년 6월 22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29일

참고문헌

『經國大全』.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2.

『國朝五禮儀』. 법제처 영인본, 1981.

『國朝五禮序例』. 법제처 영인본, 1982.

『大典通編』.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1998.

『大典會通』. 한국고전국역위원회 역주, 고려대학교출판부, 1960.

『大韓禮典』.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1998.

『新增東國輿地勝覽』.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83.

『承政院日記』

『日省錄』

『儀禮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朝鮮王朝實錄』

『春官通考』.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1975-1977.

『文禧廟營建廳謄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奎12930.

『文禧廟日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奎13045의1.

『太常志』.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奎貴 865.

강문식. 「肅宗~正祖代 社稷 제도 정비와 『社稷署儀軌』편찬-규장각 소장 『社稷署儀軌』를 중심으로-」. 정옥자 외 저. 『조선시대 문화사(상)-문물의 정비와 왕실 문화』. 일지사 (2007): 178-205.

강제훈. 「조선 초기 俗祭 祭祀床의 구성과 그 특징」. 『한국사학보』 60 (2015): 209-241.

_____ . 「朝鮮初期 國家儀禮 정비의 지향과 원칙-吉禮·凶禮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8 (2015): 137-174.

구미래. 『한국인의 죽음관과 사십구재』. 민속원, 2009.

국립문화제연구소 지음. 『국역 국조상례보편』. 민속원, 2008.

금장태. 『유교의 사상과 의례』. 예문서원, 2000.

권용란.『조선시대 왕실 조상신에 대한 연구』. 민속원, 2015.

_____.「조선시대 왕의 사친(私親)의례와 축문(祝文)-의묘(懿廟) 의례의 축문을 중심으로-」.『종교문화비평』35 (2019): 132-168.

김지영.「18세기후반 국가전례의 정비와『춘관통고』」.『한국학보』14 (2004): 95-131.

_____.「18세기 후반 정조대 '元子'의 탄생과 胎室의 조성-『胎峯謄錄』과 『元子阿只氏安胎謄錄』을 중심으로-」.『장서각』35 (2016): 106-143.

김해영.『朝鮮初期 祭祀典禮 硏究』. 集文堂, 2003.

남민이.『상장의례학』. 시그마프레스, 2002.

도이힐러, 마르티나.『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이훈상 옮김. 아카넷, 2003.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Mass. :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박성규.『주자철학의 귀신론』. 한국학술정보, 2005.

박종천.「조선시대 전례논쟁에 대한 재평가-入承大統의 전례문제를 중심으로-」.『한국사상과 문화』11 (2001): 85-128.

안호용.「朝鮮前期 喪制의 變遷과 그 社會的 意味」.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여정덕 편. 허탁・이요성 역주.『朱子語類』1. 청계, 1998.

이범직.『朝鮮時代 禮學硏究』. 國學資料院, 2004.

이욱.『조선왕실의 제향공간—정제와 속제의 변용』.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____ .「朝鮮前期 冤魂을 위한 祭祀의 변화와 그 의미－水陸齋와 厲祭를 중심으로」.『종교문화연구』3 (2001): 169-187.

____ .「조선시대 왕실의 시조(始祖)와 조경묘(肇慶廟) 건립」.『조선시대 사학보』38 (2006): 163-200.

이한수.『세종시대'家'와 '國家'』. 한국학술정보, 2006.

이현진.『조선후기 종묘전례 연구』. 일지사, 2008.

____ .「정조대 文孝世子 喪葬 의례와 그 특징」.『규장각』40. (2012): 103-143.

이현진·박희용.「조선 정조대 文禧廟의 건립과정과 공간구성」.『규장각』42 (2013): 167-197.

임민혁.『英祖의 정치와 禮』. 민속원, 2012.

정옥자.『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93.

정정남.「조선시대 壽進宮의 기능과 주변 박석[磚石]길의 의미해석」.『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추계학술발표대회자료집, 2011): 175-180.

조용철.「朝鮮 世祖代 懿敬世子 喪葬禮 特徵과 構成」.『역사민속학』45 (2014): 127-160.

주희 지음.『주자가례』. 임민혁 옮김. 예문서원, 1999.

최종성.『기우제 등록과 기후의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한형주.「조선시대 국가제사의 시대적 특징」.『민족문화연구』4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3-39.

벨, 캐서린.『의례의 이해: 의례를 보는 관점들과 의례의 차원들』. 류성민 옮김.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7. (Catherine, Bell.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Abstract

Munheuimyo Ritual Formation and Character of the *Joseon* Royal Family

kwon, YongLan(Seoul National Univ.)

In this paper I discuses the ways in which the religious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 '*Munheuimyo*(文禧廟) shrine Ritual' of *Joseon* Royal Family, which were performed as *Joseon* dynasty national rituals(國家儀禮) by analyzing its formation and character. *Munhoseja*(文孝世子), the first son of king *Jeongjo*(正祖) who was the Crown Prince while he was alive but who died early and childless became the object of worship. Originally, he could not be made the object of public ritual for he was not parents of a king. There was no precedent for it. Therefor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ifferentiation between proper rituals(正祀) and improper rituals(淫祀) It would have to be classified as improper rituals(淫祀). But it was officially adopted as part of the national rite without any controversy. This ritual was preserved even after the passing of the kings who had originally performed it and led to the inception of *Sejamyo* ritual(世子廟儀禮).

To fully understand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for why it could be formed without any controversy, this paper is put on

the two elements. In the motivation of *Sejamyo*(順懷廟) ritual which practiced as the first same case During king *Myeongjong*'s(明宗) reign and sovereign strengthening from *SukJong*'s(肅宗) reign to *Jeongjo*'s(正祖) reign.

This ritual's characteristic is that worshipped the same as the Crown Prince as he was alive. This represents that day social circumstance that the importance the first son as a center of a family and lineage. Also, It means the outcome of sovereign strengthening of former king reign is to expanded to the rituals of *Joseon* Royal Family. Through the formation of this ritual, an ancestor lineage of childless biological sons of the royal-family was formed.

Key Words: *Munhyo seja*, *Munheuimyo*, *Munheuimyo* ritual,
Death of the childless Crown Prince,
Confucian Sacrifice, Confucian view of death